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6층 •전화: 02-4977-888 •전송: 02-497-0444 •쪽수: 총 4장
•날짜: 2022년 3월 13일 (일) •담당: 조진 공공기관사업국장 010-6431-8501 •이메일 : kptu2011@gmail.com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 경상정비 공동수급의무화 저지!
발전노임단가 쟁취!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과의 약속을 지켜라

- 일시 : 3월 14일(월) 13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 건강관리카드 발급기준, 석탄발전소 확대되었지만 5년이상 - 운전·정비작업 제한 ... 김용균특조위 이행 점검단 발표한 '3년이상 종사자'로 발급기준 완화 즉시 이행해야
- 공동수급의무화 강행으로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처우하락 불 보듯 뻔해 ... 위험의 외주화 재확산하는 공동수급의무화 즉각 중단하라
- 적용한다던 발전노임단가, 아직 적용계획 없어 ... 낙찰률도 상향해 고작 71.9% 적용 ... 운전분야까지 즉시 발전노임단가 확대 적용하라
-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유총연맹-한국전력간 지분놀음에 4년 기다려 ... 생명안전분야 정규직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내 책임지고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속히 이행하라

- 식순

순서	내용	발언
1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2	연대 발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3	건강관리카드 발급	발전HPS지부 박규석지부장
4	공동수급의무화 저지	금화PSC지부 송상표지부장
5	발전노임단가 및 낙찰률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지부장
6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7	기자회견문 낭독	일진파워노조 김철진위원장
8	안전보건공단 신청서 접수	-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3년 전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이후, 대통령이 발전소 비정규직 과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두 달 남은 것이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없다. 발전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다.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약속한 경상정비분야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동수급의무화라는 명목으로 합의 자체가 무색해질 위기다. 발전노임단가는 언제 적용될지 알 수 없고, 중간착취의 대명사 낙찰률은 여전히 발전소 비정규직의 임금을 갉아먹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임기 내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모든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다.

건강관리카드, 이제야 석탄화력발전소 발급하지만 그마저도 적용대상 제한 ... 즉각 확대해야

석탄화력발전소 운전·정비 분야 노동자에게도 건강관리카드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다. 그 동안 분진과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에 노출되었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적용과 치료과정에서 애를 먹어왔지만, 이번 건강관리카드 발급으로 인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업병 인정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운전·정비 작업의 노동자들로만 한정했다. 즉, 터빈을 제어하고 감독하는 노동자, 내부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5년 이하 종사노동자들도 제외됐다. 지난 12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단도 건강관리카드 발급기준을 '3년이상 종사자'로 정비할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전비정규대표자들은 1,000명이 넘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중에 대상에 맞는 노동자들은 단 600여명 뿐이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건강관리카드 적용범위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이후에도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에서 다시 시작된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 공동수급의무화 중단하라

경상정비분야의 다수 노동조합은 21년 2월, 경상정비 통합협약체를 통해 업체변경시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 적정노무비 추가지급,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연구용역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영세 경상정비업체와의 상생' 이란 포장지를 쓴 채로 시작된 공동수급의무화 도입시도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합의문이 통째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발전소 내 다단계하청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위험발생과 고용·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위험의 외주화를 재확산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진정 정부가 소규모 영세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기술력 담보를 위한 별도시장을 마련하고, 해당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무비 착복 금지대책, 직접인건비 현실화, 비정규직 중간착취제도인 낙찰률 폐지 등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 없이 오로지 민영화·외주화 확대를 강행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단순히 발전사와 노동자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간다

는 것을 모르는가.

발전소 노임단가 적용, 인건비·안전관리비 낙찰률 폐지, 결국 정부는 안했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경상정비분야의 발전산업특성을 고려한 발전노임단가 신설·적용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운전분야는 해당 적용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고,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노무비 전용계좌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용균 사고 이후로 발전소 비정규직에 대한 합당한 처우개선을 바라며 적정임금 5% 인상의 정착은커녕,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또한 낙찰률 1.9% 상향도 매우 부족한 수준임에도 이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청노동자 중간착취의 대명사인 낙찰률은 폐지는커녕 기재부의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민간개방으로 비롯된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업체 배불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김용균 특조위가 직접노무비 47-61%만이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하청업체의 이윤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3년 전이다. 발전소 비정규직에게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위한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만을 반복하며 핵심 해결책인 발전노임단가 신설적용과 낙찰률 폐지는 시간끌기와 기재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정부 포기했다

운전분야 정규직화 역시 문재인정부 2달 채 남지 않은 현재도 안갯 속이다. 자유총연맹과 한전은 김용균 3주기가 지난 12월에야 주식양수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분매각을 위한 실사와 협상은 이제야 추진되지만 그마저도 양측 간의 현격한 가격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김용균을 보내고 시민사회와의 합의, 일방적 당정발표, 수십차례 노사전협의체가 있었음에도 지금에야 지분매각을 ‘논의’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떠나기 전 발전소 비정규직과의 약속을 지켜라

발전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을 이제 중단하고 정규직화를 즉각 이행하라. 경상정비분야 공동수급의 무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라. 발전노임단가 적용하고 인건비와 안전비용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중단하라. 발전소 모든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건강관리카드를 확대 적용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폐쇄될 발전소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것을 약속한 3년 전을 기억하고 이행하길 바란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당부한다.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공약했고, 당선됐다. 공약이행에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의 임기 5년, 정권의 움직임에 맞춰 발전소 비정규직도 행동할 것이다.

2022년 3월 14일

문재인정부는 발전 비정규직과의 약속을 지켜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정규직화 과제(2021.12.09.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행점검보고 발표)

‘연료환경 운전분야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제는 협상 당사자인 한국전력과 자유총연맹 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위원측의 의견 있음. 하지만, ‘21년 11월, 양측이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동 과제는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의 핵심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 임.(2021.12.09.)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관련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1. 최근 진행경과

- (‘21.11.9~11.23)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 입찰 공고
 - 결과 : 무응찰로 유찰
- (‘21.11.24~12.7)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 입찰 재공고
 - 결과 : 단독입찰로 유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21. 12. 7) 「한전-자총 간 한전산업 주식 양수도 협력 MOU」 체결
 - 협력범위 : 자총은 한전의 한전산업 기업실사를 지원하며, 한전은 한전산업 주식 양수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
- (‘21.12.8~21)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자문 용역」 입찰 재공고
 - 결과 : 두 개 업체 입찰 참가
- (‘22. 1. 3) 자문용역사 계약 체결
 - 대상 : KPMG 삼정회계법인(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수급)
- (‘22. 1. 7)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 (‘22. 1.11) 실사 착수
- (‘22. 2월 현재) Valuation(기업가치평가) 진행 중

2. 향후 절차

실사가치평가	인수 협상	최종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희망 가격 제시 ○ 본실사(회계·세무·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가격 검토 ○ 가격 협상 및 기타 조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매계약 체결 ○ 이사회 출자 승인 ○ 인수대금 지급 및 완료

[작성자 : 경영혁신처 그룹경영실 차장 조혜라 ☎ 061-345-3328]

연맹 한산 지분매각 관련 추진 계획

<2022. 2. 10.>

1. 추진 배경

-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정규직화 정책에 적극 호응
-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여건 보장
- 자총 및 한전의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협의 타결
 - 정부, 근로자, 자총, 한전 모두 Win Win 하는 결과 도출

2. 최근 주요 추진 경과

- '21. 9 : 연맹-한전 대표자 면담(자총 총재-한전 사장)
- '21. 10 : 국정감사(행안위 및 산자위)에서 한산 지분매각 관련 질의
- '21. 10 : 연맹, 출자관리위원회 개최(예비실사 여부 및 추진계획 보고)
- '21. 12 : 연맹-한전, 주식양수도 양해각서(MOU) 체결(12.07)
- '22. 01 : 양측 용역자문사 선정 협상(연맹: 삼일회계/한전:삼정회계)
- '22 .01~02 :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한전산업 예비실사 진행 중

3. 주요 추진 일정(안) [2~4월중]

일 자	주 요 내 용
'22년 2월	○ 인수의향서 제출 / 가격협상(1차)
'22년 3월	○ 연맹 출자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정밀실사(4~5주) (단, 인수의향서 조건을 연맹이 수용할 경우)
'22년 4월	○ 가격협상(2차), 양수도 계약 체결 (원만한 협상 진행 시)

※ 본 일정은 연맹의 추진계획(안)이며 한전의 추진 일정과 양측 협상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건강관리카드, 이제야 석탄화력발전소 발급하지만 그마저도 적용대상 제한 노동자가 기자회견 후 발급

카드발급대상자 적극 홍보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특수건강진단 DB인 K2b 시스템에서 15종의 카드발급대상 유해인자에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퇴직이 확인된 사람을 추출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야 함. 현재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알리고 발암물질 노출자가 직접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은 홍보효과가 미미하고 이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음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1월26일 하동하력 하청업체인 발전HPS 소속 노동자 85명이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신청 함.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5년 이상 종사'가 아니라 '채용 즉시' 발급해야 함.

29-3 건강관리카드 교부기준 정비

[완료]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노동자가 건강관리카드 교부기준* 충족시 즉시 교부토록 안내 강화, 유해성 연구용역('20)을 통해 교부기준 등 정비 추진

* ①옥내 혼합·분쇄·연마 등 장소 ②3년 이상 종사 ③흉부x-선상 규폐증 인정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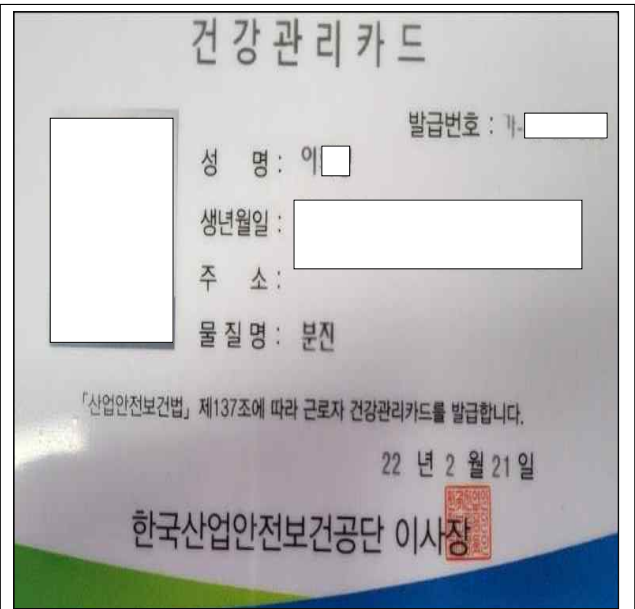
※ 완료기준: 건강관리카드(석탄발전소 광물성분진) 교부기준 개정 추진

▶ 세부기준

- 건강관리카드 중 석탄발전소 광물성분진 관련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단, 고용부 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최소한 금년도에 개정안 마련

■ 기자회견 이후 발급된 건강관리카드



■ 문재인정권에서 다시 시작된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 공동수급의무화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19년 12월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정면 대치
- 경상정비노사전협의체 근로자대표단 공동수급 의무화 따른 대응과 문제 제기
- 발전사 역시 공동수급 의무화 문제점 충분히 인식 중

참고 2 발전사 공동수급 의무화 문제점 충분히 검토

-정의당 류호정 자료제출-

□ 경상정비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수급 의무화 대상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 강제규정(의무) 아님

- 또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21.2.22)에 따라 고용승계 조건을 명시하여 발주하므로, 후발업체는 고용승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추진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에 공동수급 의무화가 미치는 영향과 개선 계획

- 현재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를 수행 중인 단독수급사는 높은 정비 기술력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조직을 확보하고 있고 발전설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위험인지 수준 높음(안전사고 위험요인 낮음)
- 공동수급시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참여로 기술력, 경험 및 안전관리 조직 등 종합 공사 수행역량이 비교적 낮아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 예상
- 공동수급 의무화(단독입찰 배제)는 현 계약관련 법령위반으로 시행 곤란
- 다만 신규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공동수급 구성비율에 따른 배점부여를 통해 공동수급 입찰시 평가우대 하고 있음 (높은 평가점수 획득은 공동수급 구성 유인책으로 작용됨)
- 또한 신규업체의 발전정비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보조설비 분야에 우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정비기술, 안전관리 등 종합 공사관리 역량 확보 필요

■ 발전소 노임단가 적용, 인건비·안전관리비 낙찰률 폐지

-경상정비분야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해 저가 수주에 대한 안전망을 제고한다는 기재부 검토 의견과 관련(연구용역 결과, 적격심사낙찰제 2.39%p 상향의견 반영불가, 종합심사낙찰제 1.91%p 상향가능),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해 노무비 착복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함.

하지만 노무비 낙찰률 미적용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노무비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원청과의 임금 차별 및 저임금 구조 고착화 우려 존재, 노무비 낙찰률 미적용 방안 적극검토 반드시 필요

-운전분야는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 발전기계공 및 발전전기공 직종 신설·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운전분야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시중노임단가 직종으로 추가신설 필요(자회사 전환 시 처우개선 기준으로 활용)

-운전분야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와 실제 지급내역 확인·점검 제도(발전산업 계약특례 신설 완료(기재부, '21.8월) 관련 경상정비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제도 동일

18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마련

[진행 중]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결과('20·'21)를 토대로, 발전산업 적정 임금제 도입 추진
 - * 발전산업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 적정임금 지급의무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적정임금 기준 예가 작성, 낙찰후 충분한 노무비 반영, 단가준수 확인절차 등 개선
- ❖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계상되도록,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또는 노무비에 낙찰률 미적용 등 방안 검토·마련
 - * 구체적인 상향 수준 관련 연구용역 → 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 협의

※ 완료기준: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마련 완료

- (특조위) ①시중노임단가 적용, ②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포함
- (검토의견) ①'적정노무비 단가기준 수립용역(~'21.12월)' 결과에 따라 결정 ②낙찰하한율 상향 조정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

□ 추진실적

○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마련 중

① 경상정비공사에 대한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지속 시행('20.1월~)

② 경상정비공사 설계 시 적정 노무비 단가기준 적용('22.1월~)

- 경상정비공사 설계 시 활용하는 건설업 시중노임에 발전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계공' 및 '발전전기공' 직종을 신설·적용방안 검토 중

* 현장 의견수렴 중, ~12월

③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해, 저가 수주에 대한 안전망 제고(기재부 검토 중)

* 연구용역 결과, 종합심사낙찰제 1.91%p 상향

④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와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점검 제도화('21.10~)

* 발전산업 계약특례 신설 완료(기재부, '21.8월)

-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와 노무비 지급액을 비교 확인하고, 실지급액이 5% 이상 낮을 경우 입찰 감점부과

□ 향후 과제

○ 적정 노무비 단가기준 연구용역 마무리(~12월) 및 제도화 방안 실시('21.1월~)

■ 중대재해처벌법 하청업체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 및 직접인력설계 개선

-인력충원을 통해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시행 현재 용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설계가 전무함.

-안전보건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검토 필요, 용역업체의 안전인력과 전담부서 설치

19 적정인력 기준 산정연구용역, 인력충원

[완료]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내용

❖ 적정 인력기준 산정 연구용역을 토대로 발전사의 인력충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완료기준: 적정 인력기준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력충원 완료

(첨부 예시) 인력충원이 필요한 직종 및 사업소별 구체 상황

직종(또는 사업소)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적정 인력 (A)		설계상 인력(B)	현원 (C) (현재 상주인원) 21년3월 기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당진사업처 (운전 1~10호기 600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12	1	0	438
당진사업처 (정비 1~8호기 4000MW) 운탄정비	8	1	0	93
보령사업처 (운전 1~8호기 400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8	1	0	334
보령사업처 (정비 1,2호기 7.8호기 2000MW) 탈황 기계/전기 정비	4	1	0	49
신서천사업처 (운전 1호기 104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2	1	0	71
신보령사업처 (운전 1~2호기 208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4	1	0	153
태안사업처 (운전 1~8호기 400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8	1	0	326
태안사업처 (운전 1~10호기 6000MW) 운탄 정비, 9~10운탄, 보일러	14	1	0	135
여수사업처(운전 1~2호기 70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2	1	0	125
호남사업처(운전 1~2호기 50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2	1	0	61

직종(또는 사업소)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적정 인력 (A)		설계상 인력(B)	현원 (C) (현재 상주인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호남사업처(정비 1~2호기 500MW) 탈황정비	1	1	0	8
고성사업처 (운전 1~2호기 208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4	1	0	178
삼천포사업처 (운전 3~6호기 212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4	1	0	276
삼천포사업처 (정비 3~4호기 1000MW) 탈황정비	1	1	0	31

하동사업처 (운전 1~8호기 4000MW) 운탄, 회처리, 탈황운전	8	1	0	296
하동사업처 (정비 1~8호기 4000MW) 운탄, 회처리, 탈황정비	8	1	0	73
제주사업처 (운전 1~2호기 200MW) 탈황운전	1	1	0	20
울산사업처 (운전 4~6호기 1200MW) 탈황운전	2	1	0	40
동해사업처 (운전 1~2호기 400MW) 운탄, 회처리	2	1	0	123
동해사업처 (정비 1~2호기 400MW) 운탄정비	1	1	0	30
총 계	94	18	0	2,860

→ 하청업체 예시 안전관리감독자 94명과 보건관리자 18명이 추가 직접인력 설계 필요